

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쟁 해결에 있어 ADR의 활성화 방안*

Measures for the Vitalization of ADR in the Resolution of Sports Disputes in Korea

김 상 찬** · 신 준 연***
Kim, Sang-Chan · Shin, Jun-Youn

목 차

- I. 서론
- II. 스포츠 분쟁의 특수성과 ADR 적합성
- III. 스포츠 분쟁의 유형과 분쟁해결 사례
- IV. 우리나라 스포츠 분쟁에서 ADR의 활성화 방안
- V. 결론

국문초록

오늘날 스포츠는 여가의 한 분야로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으며, 프로 스포츠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야구나 축구 등 인기 종목의 자유계약시장에서는 연봉 100억이 넘는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스포츠 시장,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스포츠 관련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판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선수와 선수간, 선수와 팀(구단)간, 팀(구단)과 팀(구단)간, 선수

논문접수일 : 2019.06.27.

심사완료일 : 2019.07.23.

게재확정일 : 2019.07.23.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법학박사·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혹은 구단과 협회간의 분쟁 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스포츠 분쟁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비공개적이며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여기에 스포츠 분쟁을 ADR을 통하여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분쟁을 ADR을 통하여 해결하자는 논의와 연구가 지속되어 왔고, 2006년 5월부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가 대한체육회 산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 위원회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되었다. 그 후 2014년부터 대한체육회 산하에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충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고, 2017년 9월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가칭 ‘한국스포츠중재센터’의 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스포츠 분쟁의 특수성과 ADR 적합성, 스포츠 분쟁의 유형과 함께 대표적인 스포츠분쟁 해결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스포츠 분쟁해결에서 ADR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스포츠 분야별 ADR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스포츠 분야 분쟁 해결 표준계약서의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여기에 표준중재조항을 넣어야 한다. 셋째, CAS, AAA, JSAA 등 해외 스포츠중재기관들과 제휴하고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구단, 협회,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내 스포츠 관련 단체 및 기관들 간의 협력, 그리고 스포츠 관현 학회의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ADR기구의 설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ADR, 스포츠 분쟁, 스포츠 산업, 스포츠중재위원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스포츠중재센터

1. 서론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의 시대라는 말이 상징하는 바와 같

이 오늘날은 일과 여가가 모두 중요시되고 스포츠는 여가의 한 분야로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한편, 프로 스포츠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야구나 축구 등 인기 종목의 자유계약시장에서는 연봉 100억이 넘는 선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¹⁾ 또한 e-스포츠²⁾도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새로운 종목으로 추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스포츠의 범주가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포츠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선수와 선수간, 선수와 팀(구단)간, 팀(구단)과 팀(구단)간, 선수 혹은 구단과 협회 간의 분쟁 등 분쟁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모두 소송으로 해결한다면 경제적·시간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협의, 혹은 제3자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즉 스포츠 분쟁을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이하 ‘ADR’이라고 함)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스포츠 분쟁 해결기관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KSAC’)가 대한체육회 산하에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 5월에 창립된 이 기관은 실적 부진이라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되었고,³⁾ 그 이후 최근까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한국중재학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분쟁 해결에 ADR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서, 김용길(2011년)의 연구⁴⁾에서는 스포츠 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의 필요성을, 김성룡·안건형(2012년)의 연구⁵⁾에서는 스포츠

1) 스포츠한국(<http://sports.hankooki.com>), “활짝 열린 FA 100억 시대, 거품이 아닌 시장 정가다”, 2016. 12. 10.

2) e-스포츠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당시 우리나라는 스타크래프트2에서 금메달, 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s, 약칭 LOL)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대두되었으나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e-스포츠를 경기종목에서 제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양병희, “한국 스포츠 분쟁의 ADR현황과 과제”, 「스포츠법 무엇이 문제인가」(2009 스포츠법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11, 107-108면 참조.

4) 김용길, “ADR을 활용한 스포츠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3, 109면 이하.

분쟁의 중재적합성과 중재의 활성화 방안을, 지철호(2015년)의 연구⁶⁾에서는 ADR을 통한 스포츠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윤경호(2016년)의 연구⁷⁾에서는 한국형 스포츠 분쟁 해결기구의 설립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7년 9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스포츠 중재 전문 기구 설립을 통하여 스포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가칭 ‘한국스포츠중재센터’ 설립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2014년 체육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추진을 제도적으로 상시화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산하에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와 스포츠중재센터의 설립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설립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역할과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⁸⁾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스포츠분쟁의 특수성과 ADR 적합성, 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쟁에 있어서의 ADR의 도입과정과 스포츠 분쟁 사례 등을 살펴본 본 후, 스포츠 분쟁 해결수단으로서 ADR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II. 스포츠 분쟁의 특수성과 ADR 적합성

1. 스포츠 분쟁의 특수성

스포츠는 다른 분야에 비해 국제적 연관성이 매우 많은 분야이다. 올림픽, 아시안경기대회, 월드컵 경기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아마추어 선수들도 세계

5) 김성룡·안건형, “스포츠 분쟁해결에 있어 국내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제15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 2, 71면 이하.

6) 지철호, “ADR을 통한 스포츠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8, 1면 이하.

7) 윤경호, “ADR 방식의 한국형 스포츠 분쟁해결기구에 관하여-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 신설과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복원 방안 비교-”,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 5, 21면 이하.

8) 뉴스썬, “문체부 주도 ‘스포츠 분쟁’ 중재기구--이번엔 잘 될까”, 뉴시스, 2016. 7. 17.

각국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지만, 특히 프로선수의 경우에는 매년 선수들의 이동이 국적을 불문하고 활발하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스포츠 분야는 경제적인 관련성도 매우 많으며, 그 규모 또한 거대하다. 예컨대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이 개최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본의 규모는 한 국가의 1년 예산과 비슷한 정도이며, 이적 시장에서의 프로선수들의 이적료나 연봉도 수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스포츠 분야는 경기규칙, 경기단체의 규약 등 스포츠자치권에 의한 자치법규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강하게 인정된다. 그 결과 스포츠단체를 결성하고 규칙을 제정하며, 자율적인 경기규칙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자치성이 보장되고, 각 스포츠 종목마다 세계적으로 통일된 경기 규칙을 가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지역대회, 세계대회, 올림픽 등 조직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규칙의 정당성과 구속력을 인정받게 된다.⁹⁾

한편, 국가차원에서도 스포츠 산업¹⁰⁾이 커지고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국가정책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자체가 이미 문화적 차원에서 대중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¹¹⁾

그러나 스포츠 산업이 커지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발생하는 분쟁은 증가하고 그 유형 또한 복잡,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즉 스포츠 분쟁은 유형 및 시기,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경기와 같은 국제스포츠 분쟁은 물론 전국 규모의 경기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판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¹²⁾

9) 연기영, “스포츠 분쟁해결의 특수성과 법적 과제”, 「2009년 한·필리핀 경제협력 정책세미나 및 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중재학회, 2009. 7, 177면; 김상찬·김상명, “스포츠사건의 민사적 책임과 합리적인 분쟁해결”,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11, 136면.

10)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와 관련되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적인 스포츠대회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직·간접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김용길, 전개논문, 111면).

11) 김상겸, “스포츠 분쟁해결에 관한 헌법적 연구”, 「스포츠와 법」 제5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4. 10, 18면.

2. 스포츠 분쟁의 ADR 적합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분쟁해결 방법 가운데 재판 이외의 형태를 통칭¹³⁾하거나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것¹⁴⁾을 의미한다. 이러한 ADR은 크게 운영주체, 분쟁유형, 절차의 종류, 기타 기준에 따라 4가지의 분류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¹⁵⁾ 일반적으로 절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①상담·조언, ②조정형 절차(조정·알선·화해), ③중재(재단형절차)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들 모두가 스포츠 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과 중재가 가장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⁶⁾

앞의 스포츠 분쟁의 특수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 분야는 강한 자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분쟁도 가급적 국가의 간섭을 피하고 스포츠 자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스포츠단체나 스포츠인들의 대립과 갈등은 독자적인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하여 스포츠자치권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주장되어 왔다.¹⁷⁾ 실제로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1984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2006년 우리나라의 KSAC도 이러한 차원에서 설립되었다.

스포츠 분쟁의 ADR 적합성에 대하여는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스포츠 분쟁에 적합한 ADR로서 ‘중재’를 들고 있다.¹⁸⁾ 그

12) 김성룡·안건형, 전계논문, 74면.

13) 임동진, 「대안적 갈등해결방식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27면; Nolan-Haley, M. Jacque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a Nutshell」, West Group, 2001, pp.1-2.

14) 허만, “미국에서의 사법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민사판례연구XVI」, 민사판례연구회, 1992. 8, 442면.

15) ADR유형의 분류에 대하여 자세히는, 김상찬, 「ADR」, 도서출판 온누리, 2012, 18-27면 참조.

16) 우리나라의 2006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경우에도 “선수와 단체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따라서 기구의 명칭은 ‘중재위원회’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정’과 ‘중재’를 의도하고 있었다.

17) 연기영, 전계 “스포츠 분쟁해결의 특수성과 법적 과제”, 177면; 김상찬·김상명, 전계논문, 137면.

18) 대표적인 예로, 김성룡·안건형, 전계논문, 82-85면; 김상찬·김상명, 상계논문, 137-138면;

이유는 스포츠관련 ADR기구인 CAS나 KSAC 모두 그 명칭에 ‘중재(Arbitration)’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재는 단심제이면서 ‘중재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다는 점과 스포츠중재기관이 중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재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중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⁹⁾

미국의 경우에도 스포츠 분쟁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중재제도가 더 선호되고 있는데, 이는 다년간에 걸쳐 분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재의 장점인 신속성과 비밀성을 유지하며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결과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⁰⁾

그러나 학자들이 ‘스포츠 분쟁의 중재적합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거론하는, ①신속성,²¹⁾ ②전문성, ③우호성, ④비공개성,²²⁾ ⑤비용의 경제성 등은 조정이나 화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하므로, 중재는 물론 조정이나 화해 등 모든 ADR 유형이 스포츠 분쟁 해결에 있어서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우리나라 스포츠 분쟁에의 ADR 도입과정

가.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

한국스포츠법학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분쟁 해결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2002년 동계올림픽에서 발생한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 박탈 사건²³⁾

연기영, 상계논문, 177면; 정승재, “스포츠 조정·중재 제도의 법적 과제”, 『스포츠와 법』 제 11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2, 63-64면 등 참조.

19) 실제로 2006년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경우, 위원회가 ‘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있었다(연기영, 상계논문, 176면. 이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는, 김상찬·김상명, 상계논문, 140-142면 참조.

20) 김성룡·안건형, 전계논문, 74면; Michael Lee, “Sports and Entertainment Arbitration in United States”, 『제2차 지식문화산업포럼 조찬세미나 발표자료』, 대한중재인협회, 2010. 6, 1면.

21) 다만, 중재는 단심제라서 재판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10면; 김성룡·안건형, 상계논문, 82면), 화해나 조정을 포함한 ADR제도의 특성으로 일반적으로 ‘신속성’을 든다(김상찬, 전계서, 14면).

22) 예컨대 스포츠선수들의 이적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단과의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릴 수 있기 때문에 ADR의 비공개성은 스포츠 분쟁의 ADR 적합성과 연관된다.

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발생한 양태영 선수 채점오류 사건²⁴⁾ 등이 발생하면서 스포츠중재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한체육회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2006년 5월 17일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를 설립하였다.²⁵⁾ 그러나 KSAC는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으로서,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출범하였고,²⁶⁾ 2009년 7월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로 통합되면서 개정정관에서 KSAC의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2010년부터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²⁷⁾ 2009년 말에 사실상 해체하게 되었다.²⁸⁾

나.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 설립

2013년 9월 30일 새누리당 이예리사 의원이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 신설을 위해 관련 규정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

23)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우리나라의 김동성 선수가 미국의 오노(Apolo Anton Ohno)선수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결승선을 먼저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실격처리를 당한 사건이다(자세한 내용은 본고 Ⅲ.2.마.(1) 참조).

24)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체조 개인종합결승에서 양태영 선수가 심판진의 채점오류를 이유로 CAS 특별중재부에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당한 사건이다(자세한 내용은 본고 Ⅲ.2.마.(2) 참조).

25)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연기영,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11, 416-418면 참조.

26) 중재위원회의 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추천 인사로 구성되며, 스포츠중재위원회의 재산 및 운영예산을 전적으로 대한체육회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정승재, 전계논문, 69면).

27) 대한체육회가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예산 지원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후 1년간 중재판정을 내린 사건은 1건뿐이었고, 스포츠 분쟁 관련 상담도 선수의 이적, 징계처분, 선수등록 등에 관한 37건 뿐이었다(연기영, 전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428면).

28) 일본의 경우, 2003년 4월에 ‘일본스포츠중재기구(JSAA)’를 설립한 후, 2003년 3건, 2004년 2건, 2005년 1건, 2006년 1건, 2007년 0건, 2008년 3건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처리 실적이 거의 없었지만 2009년 4월에 오히려 재단법인으로 확고한 법적 지위를 확립시켜 발전시키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지철호, “일본스포츠중재기구의중재절차 및사건처리와 시사점”, 「스포츠와 법」 제16권 제3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3. 8, 120-126면 참조.

데,²⁹⁾ 이 개정 법률안은 “스포츠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함께 스포츠 윤리 및 공정성 위반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정보 수집의 역할, 그리고 폭력 및 성폭력, 인권침해, 승부조작 등 스포츠 분야의 비리제보 및 청구에 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및 형사고발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었다.³⁰⁾ 그러나 이 개정 법률안은 2013년 10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뒤 2014년 4월 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까지 거쳤으나,³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가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³²⁾ 이러한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립추진은 관련 분야의 연구나 해외 사례 실태 파악 등을 충분하게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진행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³³⁾

그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면서 새로 출범하는 대한체육회 내부에 ‘스포츠공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산하 위원회 형식으로 두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비리나 분쟁사안이 생겼을 경우 개별 경기단체에서 징계논의나 분쟁 조정에 나서지 않더라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설립근거를 대한체육회 정관에 명문화하였다(동 정관 제46조).

다.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 발족 및 한국스포츠중재센터 설립 준비

29)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스포츠 분야의 비리나 분쟁해결 대책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정부는 2014년 1월 중순에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가칭) 설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었다(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 및 대책” 『보도자료』, 2014. 1. 15.).

30) 또한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다. 위원은 스포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5조의3).

31)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2019. 6. 6. 방문).

32)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윤경호, 전계 “ADR 방식의 한국형 스포츠 분쟁해결기구에 관하여-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 신설과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복원 방안 비교-”, 27-32면 참조.

33) 기구의 법적 제도적 근거나, 운영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담당 업무의 범위에 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기응변식으로 마련된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지철호, 전계 “ADR을 통한 스포츠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3면).

대한상사중재원은 2017년 9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한국스포츠중재센터(가칭)’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총괄추진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성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9인의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³⁴⁾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기반 구축을 위해 국내 스포츠 분야 실정에 부합하는 스포츠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중재판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담보를 위한 스포츠 전문 중재인단 구성 작업을 수행하며 또한 스포츠 산업 관계자와 체육단체 등에서의 중재조항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스포츠중재센터의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라. 소결

우리나라 스포츠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ADR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2006년에 설립되었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법률이 아니라 대한체육회 정관을 근거로 한 결과,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정관이 개정되고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2009년 말에 폐지되었고, 2014년 설립된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도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하여 설립되었으나, 이 위원회는 독립성 등 여러 측면에서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충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2017년 9월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가칭 ‘한국스포츠중재센터’의 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중재센터가 설립되면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³⁵⁾

34) 위원으로 강래혁 변호사(법무법인 해명), 김선웅 사무총장(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박은영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박창주 변호사(법무법인 양현), 안병한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학과), 남기연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등 9인의 전문가를 위촉하였다(뉴스와이어(<http://www.newswire.co.kr>), “대한상사중재원,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 발족”, 2017. 9. 6.).

35) 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KSAC가 실패한 상황에서 스포츠 분쟁중재기구가 출범한다면 대한체육회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국, 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ADR기구를 설립하여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부, 대한체육회, 대한상사원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의 합의와 협력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III. 스포츠 분쟁의 유형과 분쟁해결 사례

1. 스포츠 분쟁의 유형

스포츠 분쟁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일본에서는 스포츠의 분쟁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소송적합성을 중심으로 3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첫째 유형은 법률적 쟁송으로서 법원에 제소될 수 있는 범주로서, 예컨대 구단과 선수와의 사이의 연봉, 이적, 계약해제에 관한 분쟁이나 선수와 후원계약의 분쟁, 경기단체, 팀, 선수 등이 보유하는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에 관한 분쟁 등을 들고 있다. 둘째 유형은 소송보다는 ADR에 의한 해결에 적합한 범주로서, 예컨대 대표선수 선발에 관한 분쟁, 선수, 감독, 코치, 팀 등의 자격 인정이나 경기단체규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분쟁, 경기단체에의 가입의 허용 여부에 관한 분쟁, 반도핑 규칙 위반의 유무에 관한 분쟁 등을 들고 있다. 셋째 유형은 소송에서 다루거나 ADR 기관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범주로서, 예컨대 경기 중의 심판의 판정에 관한 분쟁을 들고 있다.³⁶⁾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타당하지 않다.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적합한 분쟁유형과 ADR 기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적합한 분쟁유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앞의 구분처럼 소송에서만, 또는 ADR 절차로만 해결이 가능하거나 이들 중 어느 방법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유형의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예컨대, 위의 셋째 유형의 경우 올림픽 경기 중 판정시비와 관련해서는 CAS를 통하여 신속한 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바,³⁷⁾ CAS에 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뉴스룸, “문체부 주도 ‘스포츠 분쟁’ 중재기구—이번엔 잘 될까”, 2016. 7. 17.).

36) 小川和茂, “스포츠仲裁”, 『法律時報』 第87卷 第4號, 日本評論社, 2015, 31-32面.

한 해결도 ADR에 의한 해결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스포츠 분쟁의 유형을 국제적 분쟁과 국내적 분쟁, 프로 스포츠 분쟁과 아마추어 스포츠 분쟁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³⁸⁾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쟁을 스포츠 산업유형에 따라, ①구단과 선수간의 분쟁(연봉, 이적, 계약해제), ②스포츠 산업상 분쟁(스폰서계약, 중계권계약 등), ③스포츠 에이전트 계약 관련 분쟁, ④경기판정 및 선수 도핑 관련 분쟁 등으로 구분하여 국내분쟁 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³⁹⁾

2. 국내 스포츠 분쟁의 유형별 해결사례

가. 선수 연봉 관련 분쟁

2010년 11월 우리나라의 프로농구 구단 오리온스 소속의 김승현 선수는 한국농구연맹(KBL)의 조정을 거쳐 결정된 3억 원의 연봉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6년 이면계약에 따른 10억 5000만원의 연봉을 요구하다가 임의 탈퇴 처리되었다.⁴⁰⁾ 한국농구연맹의 조정으로 6억 원의 연봉에 합의하였으나 2009-2010 시즌에 김승현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활약이 부진하자 오리온스 구단은 연봉삭감을 요구하였고 한국농구연맹은 다시 연봉을 3억 원으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37) 김용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 -독일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의 도핑사례 분석을 겸하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 11, 95면.

38)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로, 김성룡·안건형, 전제논문, 75면 참조.

39) 이에 관하여, 특히 국제적 스포츠 분쟁으로서, 국제스포츠경기단체가 스포츠선수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처분과 관련된 분쟁, 올림픽 경기 참가와 관련된 분쟁, 방송중계권 계약 등 스포츠계약과 관련한 분쟁, 그리고, 선수이적 관련분쟁, 도핑관련 문제 등은 법원에 의한 해결보다는 전문적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강병근,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와 스포츠국제법의 과제 -국제스포츠 분쟁해결 제도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장간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0. 2, 159면).

40) 임의탈퇴가 될 경우 선수로서 다른 구단으로 이적이 불가능하고, 선수계약도 정지되고, 복귀도 오직 기존 소속구단으로만 복귀가 가능하다. 2006년초 자유계약선수 신분을 획득한 김승현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것을 염려한 오리온스 구단이 5년간 연봉 10억 5000만원을 제시하면서 한 팀당 선수연봉총액제한(일명 샐러리캡)의 존재를 이유로 계약서상에는 연봉 4억 3000만원이라고 하고 이면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였다. 김승현 선수는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제소하였다. 법원은 오리온스가 계약대로 연봉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임의탈퇴 공시효력 가치 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김승현 선수는 미지급 연봉 12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복귀를 허용하고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오리온스 구단도 이에 동의하여 한국농구연맹 재정위원회가 김승현 선수의 복귀를 허용하면서 마무리되었다.⁴¹⁾

나. 이직 관련 분쟁

2019년 4월 우리나라 배구 국가대표팀의 김호철 감독은 OK 저축은행 배구팀 감독으로 무단 이직을 시도한 것을 이유로 대한배구협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⁴²⁾ 국가대표팀 감독에서 물러났는데, 김호철 감독은 무단 이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고,⁴³⁾ 2019년 7월에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김 감독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조정하였다. 재심의 결과에 대해 김호철 감독과 배구협회가 모두 수용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다만, 징계경감사유는 김호철 감독이 선수와 감독으로 우리나라 배구에 공헌한 부분을 고려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것이지만, ‘전임감독계약서’를 보면 애초부터 징계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문이 있다.⁴⁴⁾

41) 경향신문, “‘천재 가드’ 김승현을 잃고 싶지 않다”(스포츠기자석), 2010. 11. 22.

42) 2019년 4월 19일 대한배구협회는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호철 감독의 1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뉴스앤미디어, “대한배구협회, ‘이직 물의’ 김호철 감독 1년 자격정지 징계”, 2019. 4. 20.).

43) 김호철 감독은 무단으로 이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협회가 당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애초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계약을 할 때부터 대한배구협회회장으로부터 이직에 대한 허락을 받은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표팀 일정 및 대회참가를 구상하던 중 협회의 재정 부족으로 대표팀 운영이 힘들어지자 김호철 감독이 재정적 지원을 위해 OK 저축은행 측과 연락을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당시 OK 저축은행 측에서 먼저 감독직 제안이 들어와서 이를 대한배구협회에 보고하였으며 협회 측에서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하였다(네이버스포츠, “김호철 감독 이직 파문후 첫 인터뷰 ‘나만 파렴치? 협회도 알고 있었다’”, 2019. 6. 7.).

44) 애초의 징계사유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5호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적용하였다. 즉, 김호철 감독이 5년 전임감독으로 계약하고도 OK저축은행에 이직을 먼저 제안해 국가대표팀 감독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것이 징계이유인데, 김 감독과 협회의 ‘전임감독계약서’를 보면 전임감독 계약기간 이직이나 겸직을 금지한다고 하고 있지

다. 스포츠 중계권 관련 분쟁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대한 독점중계권을 SBS가 가지고 있어서 KBS나 MBC는 뉴스 등의 자료화면에 SBS로부터 받은 영상물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독점중계권을 인정하기 전에는 공중파 방송3사가 공동으로 스포츠 중계권을 협상하여 중계권료 인상을 억제하고 중계권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SBS의 독점중계권 취득으로 인해 이러한 협상은 무의미하게 되었고, 2010년 KBS와 MBC는 SBS를 상대로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SBS가 이에 응하지 않아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SBS에 대한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의 허락금지가처분 신청도 기각되면서 SBS의 독점 중계가 가능하게 되었다.⁴⁵⁾ 현재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의 우리나라 중계권을 독점하여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중계권을 놓고 대립이 발생하여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⁴⁶⁾

라.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 관련 분쟁

스포츠 에이전트란 선수와 소속 구단 또는 팀 간의 고용 등 계약 관련 협상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을 말한다.⁴⁷⁾ 에이전트는 소속된 선수의 관리, 엔터테인먼트, 스폰서십 등 선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계약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사와 선수간, 에이전트사와 에이전트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만, 2단계 계약부터는 이직 때까지 받은 급여의 50%를 위약금으로 내라는 단서조항이 있고, 김 감독의 1단계 계약기간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까지, 2단계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로 되어 있으며, 김 감독이 이직을 위해 OK저축은행을 만난 3월에서 4월 초는 2단계 계약기간이어서, 위약금조항의 반대해석상 급여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면 이직해도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YTN, “김호철 자격정지 3개월로 감경--.전임감독 계약서 단독입수”, 2019. 7. 10.).

45) 이데일리(<http://www.edaily.co.kr>), “올림픽 중계 독점, 과거에도 문제 있었다”, 2019. 6. 5.

46)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JTBC vs 지상파 중계권 논쟁, 어떻게 봐야 하나”, 2019. 6. 6.

47) 이재숙, “스포츠 에이전트 법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2호,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5, 95면.

2007년 미국의 스포츠마케팅 에이전트사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그룹(IMG)의 자회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IM)은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IB의 실수로 에이전트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IM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⁴⁸⁾ 이 사건에서 법원은 IM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⁴⁹⁾

마. 경기판정 및 도핑 관련 분쟁

(1) 김동성 사건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우리나라의 김동성 선수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지만, 호주의 제임스 휴이시 주심이 김동성 선수가 미국의 오노(Apolo Anton Ohno) 선수의 진로를 방해한 ‘크로스 체킹’ 반칙을 범했다고 판단하여 김동성 선수를 실격시키고 금메달을 박탈한 데 대하여 대한체육회(KOC)가 심판판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CAS 특별중재부에 중재를 신청한 사건이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심판과 보조인의 신문을 패널에 요청하였고, 패널이 이들을 신문하였다. 그러나 비디오 증거에 대해서는 비디오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각도에서 촬영되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특별히 증거로 채택할 만한 사실관계가 없다고 하여 대한체육회의 증거조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⁵⁰⁾

48) 즉, IM이 2006년 5월 김연아 선수와 3년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년 IB스포츠가 이중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반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머니투데이, “김연아 선수 놓고 에이전트간 법적 분쟁”, 2007. 11. 18.).

49)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연기영, “김연아와 오서의 결별, 그리고 스포츠계약법”, 「스포츠동지」, 2010. 8. 31.자 기고문 참조.

50) 자세한 내용은 강병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스포츠 분쟁의 처리”, 「스포츠와 법」 제5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4. 10. 118-121면, 연기영, 전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417면; Arbitration CAS ad hoc Division (OWG Salt Lake City 2002) 007 Korean Olympic Committee(KOC) v International Skating Union(ISU), award of 23 February 2002(“KOC v ISU”), Matthieu Reeb(eds), Digest of CAS Award III 2001-2003 (2004), 611; Richard H. McLaren and Patrick Clement,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The Ad Hoc Division at the Salt Lake City Winter Olympic Games,” I.S.L.R.,

(2) 양태영 사건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체조선수 양태영 선수가 남자체조 개인종합 결승전에서 심판진의 채점오류로 시작점수(Start Value)에서 10점이 아닌 9.9점을 받아서 동메달에 그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CAS 특별중재부에 중재를 신청한 사건이다.⁵¹⁾ CAS 특별중재부의 패널은 양태영 선수를 제외한 다른 당사자인 국제체조연맹(FIG)이 중재심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CAS Code 특별중재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보통중재부로 해당사건을 이관하였다.⁵²⁾ 그러나 이관된 후 오판에 대한 적절한 이의제기가 즉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종료 후에 심판의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CAS 보통중재부는 이 사건을 기각하였다.⁵³⁾

바. 소결

위의 스포츠 분쟁 사례 중 ‘가’는 한국농구연맹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그리고 한국농구연맹의 조정을 거친 사안이고, ‘나’의 경우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을 통하여 해결된 사건이며, ‘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의 조정신청과 법원에의 가처분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이고, ‘라’의 경우는 법원의 재판으로, ‘마’의 경우는 CAS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사건이다. 모든 사례가 ADR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가’, ‘다’와 ‘라’의 경우는 법원까지 간 사례이다. 생각건대 ‘마’의 경우는 그 관할이 CAS에 있으므로 CAS에 중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사안은 국내의 ADR 기구를 통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스포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ADR 제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004 2(May), 51; Peter Leaver, “The CAS Ad Hoc Divison at the Salt Lake City Winter Olympic Ganges 2002” I.S.L.R. 2002 2(Jul), 50-52.

51) CAS 2004/A/704 Yang Tae Young v. FIG, para 1.1.1.

52) Ibid, para 1.1.5.

53) Ibid, para 4.4.4.

Ⅳ. 우리나라 스포츠 분쟁에서 ADR의 활성화 방안

앞의 Ⅱ.3.에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에서도 ADR을 도입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해서 있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혀 그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한다.

1. 스포츠 분야별 ADR 전문가 양성

스포츠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다. 축구, 농구, 야구 등 다양한 경기종목이 있고,⁵⁴⁾ 스포츠 산업적 측면에서도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눌 수 있다.⁵⁵⁾ 그리고 e-스포츠라는 분야가 스포츠에 추가된 것처럼 스포츠의 범주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ADR 전문가(조정인, 중재인)를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후에 살펴볼 스포츠 분쟁 ADR 기관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분야가 다양한 만큼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해야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그 절차나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ADR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관련 ADR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우선 현재 운영 중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전문가과정 및 중재인양성과정, 그리고 서울YMCA의 조정전문가양성과정 등을 활용하여⁵⁶⁾ 스포츠 선수 출신이나 스포츠 관련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정인·중재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체육회 산하에, 또는 스포츠관련

54) 참고로 2016년 리우올림픽의 경기분야는 28개 종목 308세부종목으로 구분되고 있고, 대한체육회 정가맹단체 수는 59개 분야로 세분되고 있다.

55) 대한체육회 스포츠 종목별 선수등록통계에 의하면, 2017년 12월 현재 59개 종목 136,045명의 전문선수가 등록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김용길의 연구는, 2011년 당시에도 대한체육회 등록선수는 13만명을 넘고 있고, 1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선수를 포함하여 30만명의 인력이 국내 스포츠산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용길, 전개논문, 111면).

56) 우리나라의 조정인(또는 중재인) 양성 교육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는, 김상찬, “일본의 조정인 양성현황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59집, 한국법학회, 2015. 9, 196-198면 참조.

ADR 센터가 설립된다면 그 센터 산하에 스포츠 분쟁관련 ADR 전문가 양성과정을 상시 개설하면 좋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스포츠 분쟁관련 ADR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2. 스포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

정부와 대한체육회, 스포츠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이 공동으로 스포츠분야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스포츠선수와 프로구단 간의 전속계약이나 스포츠선수와 에이전트 간의 에이전시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이 표준계약서 상에 표준중재조항을 넣는 방법으로 분쟁발생시 우선적으로 중재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다면 스포츠분야 ADR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 AAA)는 메이저리그 구단과 프로야구선수 간 연봉계약시 분쟁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중재조항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⁵⁷⁾

3. 해외 스포츠중재기관들과의 제휴와 교류 확대

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쟁 관련 ADR을 활성화하려면 스포츠 분쟁해결에 권위 있는 ADR 기구인 CAS는 물론 미국의 AAA 뿐만 아니라 일본스포츠중재기구(JSAA) 등 여러 국가의 스포츠 분쟁해결기구들과 제휴하고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경기 등 국제적인 스포츠대회, 프로 스포츠선수들의 국경을 초월한 계약 및 이적 등 스포츠의 국가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스포츠 분쟁도 국경을 초월한 사안들이 증가할 여지가 크므로, 각국의 스포츠 분쟁 ADR 기구들 간에 전략적 제휴와 교류를 통하여 협력을 증

57) AAA의 스포츠중재 표준조항을 보면, 일반적인 중재와도 다른 방식의 중재조항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예컨대 중재인은 판정을 내릴 필요 없이 당사자들이 제출한 금액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속한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한다(김성룡·안건형, 전제논문, 92면).

진함으로써, 스포츠관련 분쟁 해결제도, 절차의 운영방법, 성공 및 실패사례 등을 공유한다면 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쟁 ADR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국내 스포츠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협력

다른 분야의 ADR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스포츠 관련 AD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작게는 팀(구단)부터 시작해서 협회, 대한체육회, 대한상사중재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였지만 무산되어 결국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하여 설립하였으며, 최근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추진하는 스포츠중재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와의 관계 때문에 견해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스포츠 관련 ADR의 정착이나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중재학회, 한국조정학회 등 스포츠 및 ADR관련 학회⁵⁸⁾의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이 스포츠 관련 ADR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스포츠 분쟁 ADR 기구의 설립

과거에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근거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실적부진으로 폐지되었고, 지금도 대한체육회 정관을 근거로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스포츠관련 ADR 기구로서의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 산하에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가칭 ‘한국스포츠중재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가운데 언제 설립될지 알 수 없다.

생각건대, 스포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관련 ADR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상사중재원 산하에 중재센터의 형

58) 김성률·안건형, 상계논문, 84면에서는, 대한중재인협회 산하의 ‘지식문화산업포럼’도 스포츠 중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단체로 거론하고 있다.

태로 설립할 수도 있고, 대한체육회 산하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분쟁 해결 센터를 설립해도 좋을 것이다. 명칭은 ‘한국스포츠중재센터’든 ‘한국스포츠ADR센터’든 관계없지만, 설립되는 ADR 기구는 적어도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관련기관과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법률에 근거한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시장이 날로 발전하는 가운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다. 스포츠 분쟁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ADR로 해결하기에 적합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스포츠관련 ADR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나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실적이 매우 적고, 이 기구들은 대한체육회 정관을 근거로 체육회 산하에 설립되어 있어서 그 기능이나 역할, 기구의 독립성이나 공정성 등에 있어서 스포츠 분쟁해결을 위한 ADR 센터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올림픽과 같이 국제적인 스포츠경기대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스포츠 선진국이라 자부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관련 ADR 제도는 정착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관련 ADR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분야별 ADR 전문가 양성, 스포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 해외 스포츠중재기관들과의 제휴와 교류 확대, 국내 스포츠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협력, 스포츠 분쟁 ADR기구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스포츠중재센터’가 문화관광체육부, 대한체육회, 대한상사중재원, 스포츠관련 협회와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명실상부한 스포츠관련 ADR기구로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상찬, 「ADR」, 도서출판 온누리, 2012.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임동진,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의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 강병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스포츠 분쟁의 처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5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4. 10.
- _____,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와 스포츠국제법의 과제 -국제스포츠 분쟁해결 제도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창간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0. 2.
- 김상겸, “스포츠 분쟁해결에 관한 헌법적 연구”, 「스포츠와 법」 제5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4. 10.
- 김상찬, “일본의 조정인 양성현황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59집, 한국법학회, 2015. 9.
- 김상찬·김상명, “스포츠사고의 민사적 책임과 합리적인 분쟁해결”,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11.
- 김성룡·안건형, “스포츠 분쟁해결에 있어 국내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제15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 2.
- 김용길, “ADR을 활용한 스포츠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3.
- 김용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 -독일 빙상 선수 Claudia Pechstein의 도핑사례 분석을 곁하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 11.
- 윤경호, “ADR 방식의 한국형 스포츠 분쟁해결기구에 관하여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 신설과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복원 방안 비교-”,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 5.
- 양병희, “한국 스포츠 분쟁의 ADR현황과 과제”, 「스포츠법 무엇이 문제인가」

- (2009 스포츠법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11.
- 연기영,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11.
- _____, “스포츠 분쟁해결의 특수성과 법적 과제”, 「2009년 한·필리핀 경제협력 정책세미나 및 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중재학회, 2009. 7.
- 이재숙, “스포츠 에이전트 법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5.
- 정승재, “스포츠 조정·중재 제도의 법적 과제”,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2.
- 지철호, “ADR을 통한 스포츠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8.
- _____, “일본 스포츠중재기구의 중재절차 및 사건처리와 시사점”, 「스포츠와 법」 제16권 제3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3. 8.
- 허 만, “미국에서의 사법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민사판례연구XVI」, 민사판례연구회, 1992. 8.
- 小川和茂, “스포츠仲裁”, 「法律時報」第87卷 第4号, 日本評論社, 2015.
- Arbitration CAS ad hoc Division (OWG Salt Lake City 2002) 007 Korean Olympic Committee(KOC) v International Skating Union(ISU), award of 23 February 2002("KOC v ISU"), Matthieu Reeb(eds), Digest of CAS Award III 2001-2003 (2004), 611.
- Michael Lee, “Sports and Entertainment Arbitration in United States”, 「제2차 지식문화산업포럼 조찬세미나 발표자료」, 대한중재인협회, 2010. 6.
- Richard H. McLaren and Patrick Clement,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The Ad Hoc Division at the Salt Lake City Winter Olympic Games,” I.S.L.R, 2004 2(May), 51.
- Peter Leaver, “The CAS Ad Hoc Divison at the Salt Lake City Winter Olympic Gamges 2002” I.S.L.R. 2002 2(Jul), 50-52.

[Abstract]

Measures for the Vitalization of ADR in the Resolution of Sports Disputes in Korea

Kim, Sang-Chan

Ph.D. in Law, Professor, Jeju National Univ. Law School

Shin, Jun-Youn

JD Candidate, Jeju National Univ. Law School

Today, the sports have been certainly settled down as a leisure area, and the market of professional sports is also continuously growing. In the free-contract market for popular sports such as baseball or soccer, there are players who receive more than ten billion for annual salary. With the development of sports market and sports industry, the disputes related to sports are also increasing. These type of disputes can be categorized as following: disputes between players, disputes between player and team(club), and disputes between team(club) and team(club).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the sports disputes should be quickly, privately, and economically resolved, which is the reason why the sports disputes should be resolved through ADR.

In Korea, there have been continuous discussions and researches saying that the sports disputes should be resolved through ADR. Even though the 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KSAC)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the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in May 2006, this committee was abolished in 2009 for the reason of poor performance. After that, the Korea Commission for Fair Play in Sport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the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in 2014. However, this

system is not good enough to resolve sports disputes. Even though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launched the ‘Sports Arbitration Advisory Committee’ in September 2017, prepar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organization, its tentative name being ‘The Korea Sports Arbitration Center’, there has been no progress till today.

Based on this situation, after examin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sports disputes, the suitability for ADR, the types of sports disputes, and cases of dispute resolution, as the measures for the vitalization of ADR in the sports disputes of Korea, this thesis suggests the cultivation of ADR experts in each sports area, enactment of the standard contract for dispute resolution in sport area, expansion of alliance/exchange with overseas sports arbitration organizations, cooperation with domestic sports-related organizations/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DR organization for the resolution of sports disputes.

Key words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ports Dispute, Sports Industry,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Korea Commission for Fair Play in Sport, Sports Arbitration Center